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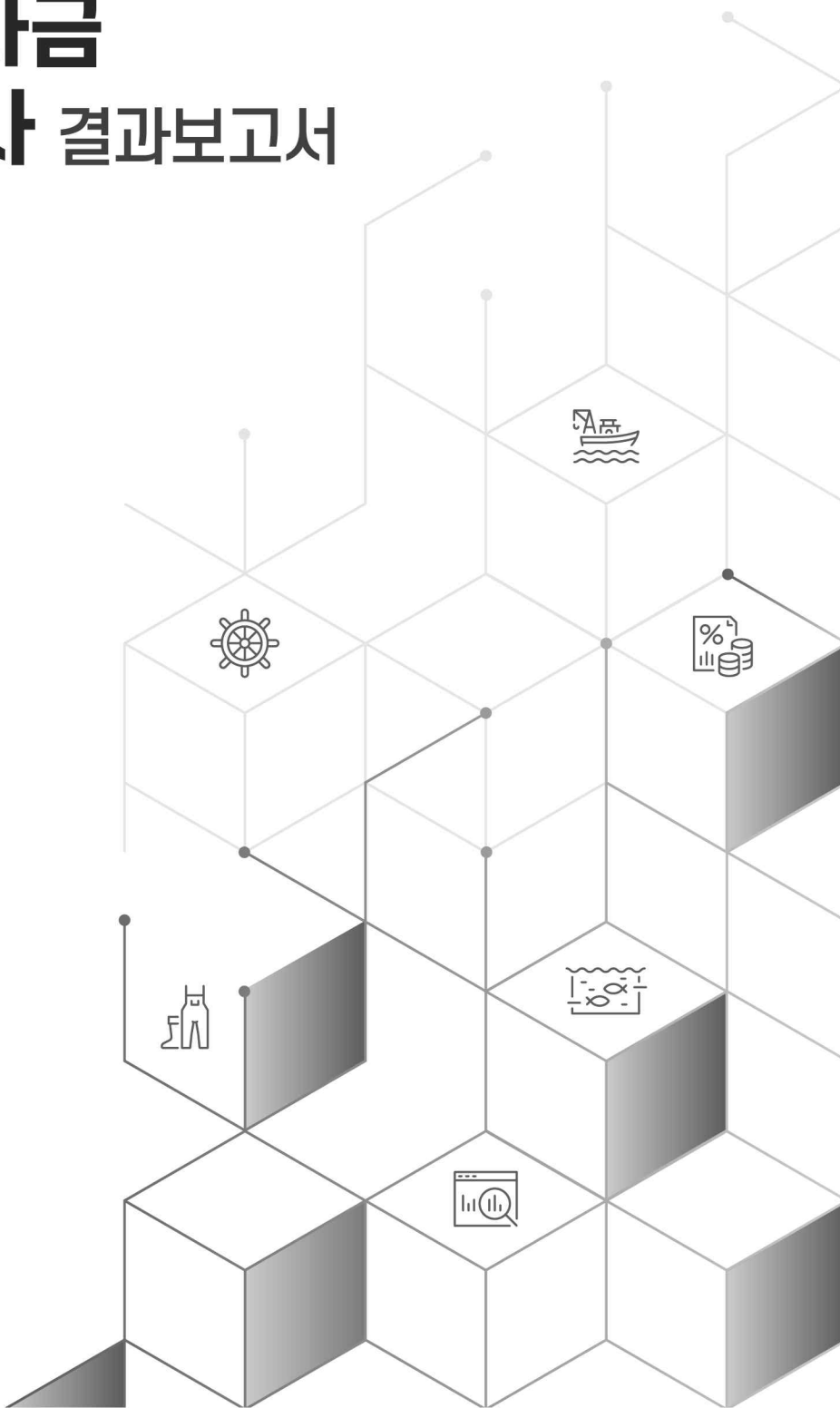
승인번호
제 307002 호

2024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 결과보고서

2024. 12.

 수협중앙회



· 이용자를 위하여 ·

1. 본 조사의 조사기준일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어업면허·허가·신고 등 행정 처분을 통해 대상어업을 경영하는 어업경영체의 어업건수 및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조사합니다.
 - ※ 어선어업과 신고어업 등은 1개의 어업경영체가 1건의 어업건수를, 양식업, 수산종자 생산업, 내수면양식업 등 면적을 처분내용으로 하는 어업은 기준면적당 어업건수를 산출하여 조사함
 - ※ 어선어업은 초출어 1항차 소요경비를, 양식업은 건홍(시설) 또는 치어 입식 후 채취까지의 소요자금(운영경비)을 조사함
2. 본 조사는 조사대상 어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에 대하여 건당 어업경영자금소요액을 조사하였습니다.
 - ※ 2024년 소요액 조사대상이 아닌 양식업, 정치망어업, 수산종자생산업, 신고어업, 마을 어업, 구획어업, 천일염제조업의 건당 소요액은 전년도 소요액에서 물가상승률, 어업경영비 증감율 등을 감안하여 소요액 추정
3.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는 반올림으로 인해 가감항목 숫자가 맞지 않거나 세목의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2000년 이후의 어업경영자금소요액 조사결과는 본회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fei.suhyup.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02-2240-0406, 04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2024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 결과보고서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대상	3
4. 조사내용	3
5. 조사방법	4
6. 조사기준일	6
7. 조사담당	6
8. 조사기간	6
9. 조사항목	6
10. 조사 및 집계, 분석방법	7
11. 용어의 정의	8
12. 조사대상어업의 종류, 명칭, 규모	14

II. 조사결과 23

1. 총괄	25
2. 조합원, 비조합원 건수 및 소요액 현황	26
3. 금융본부별 어업건수 및 소요액	27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대상
4. 조사내용
5. 조사방법
6. 조사기준일
7. 조사담당
8. 조사기간
9. 조사항목
10. 조사 및 집계, 분석방법
11. 용어의 정의
12. 조사대상어업의 종류, 명칭, 규모

I. 조사개요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에 의해 어업건수의 종류별, 지역별 분포상황과 어업경영자금의 소요액 규모를 파악하여 수산자금의 원활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2 법적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2조

3 조사대상

- 「수산업법」상 규정된 어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처분되는 내수면어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천일염제조업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4 조사내용

가. 어업건수

- 어업종류별 분포상황
-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분포상황
- 도별, 조합별 분포상황

나. 건당 소요액

- 어업별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산출
 - 어선어업 : 출어경비 (초출어 1항차)
 - 양식업 : 운영경비 (1회임기간)

5

조사방법

가. 어업건수

- 1) 전수조사 : 조사원이 행정관청의 처분대장에 의한 어업경영 여부 확인
- 2) 면적 등 별도 기준에 따른 어업건수 등록

업종	어업건수
어 선 어 업 정 치 망 어 업 신 고 어 업 구 획 어 업 내 수 면 어 로 어 업	행 정 처 분 건 수
양 식 업 마 을 어 업 수 산 종 자 생 산 업 내 수 면 양 식 업 관 상 어 양 식 업 천 일 염 제 조 업	업종별 기준에 따른 개별 산정 ※ 나. 의 3) 참조

나. 건당 소요액

- 1) 표본조사(현지조사)
- 2) 표본체 선정
 - 어업별로 층화추출하여 대상조합(조사원)에 배정된 표본수에 대하여 대상조합에서는 계통 추출한 후 표본 경영체와의 면접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조사

3) 어업별 건수 산정 방식

[illegible]

6 조사기준일 : 2024년 3월 31일

7 조사담당

구분	담당업무
수 협 중 앙 회(수산경제연구원)	조사기획·교육, 자료검토·분석, 결과보고
회 원 조 합	표본조사

8 조사기간 : 2024년 4월 ~ 6월 (단, 집계·분석기간은 별도)

9 조사항목

구분	어 선 어 업	정 치 망 어 업	양 식 업	내수면 양식업	기 타
어업건수	- 어업의 종류 - 허가(면허)번호 - 선박번호 - 선명 - 톤급 - 선질 - 선주(경영자) - 경영자 주소 - 연락처 - 조합원 여부	- 어업의 종류 - 면허번호 - 구획수면 - 어장소재지 - 경영자 - 경영자 주소 - 연락처 - 조합원 여부	- 양식종류(방법) - 면허번호 - 면허면적 - 시설면적 - 경영자 - 경영자 주소 - 연락처 - 어장 소재지 - 조합원 여부	- 양식종류(방법) - 면허번호 - 면허면적 - 시설면적 - 경영자 - 경영자 주소 - 연락처 - 어장 소재지 - 조합원 여부	수신종자생산업, 마을어업, 신고어업, 천일염제조업은 어선어업 또는 양식업 조사항목을 준용하여 조사
어업경영자금건당소요액	- 선체수리비 - 기관수리비 - 어구수리비 - 선원임금 - 복리후생비 - 유류비 - 용품비 - 열음 및 어상자 - 주·부식비 - 기타 - 어업수익	- 선체수리비 - 기관수리비 - 어구수리비 - 선원임금 - 복리후생비 - 유류비 - 용품비 - 열음 및 어상자 - 주·부식비 - 기타 - 어업수익	- 종자비 - 시설유지비 - 보조선비 - 인건비 - 운영관리비 - 사료비 - 기타 - 어업수익	- 종묘비 - 시설유지비 - 보조선비 - 인건비 - 운영관리비 - 사료비 - 기타 - 어업수익	

10 조사 및 집계, 분석방법

가. 어업건수

- 1) 조합별로 조합장이 임명한 조사원이 중양회에서 실시한 교육을 필한 후, 행정관청의 대장(사본 비치)과 실제 경영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 2) 2024. 3. 3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관 내 어업인에게 처분된 면허, 허가, 신고어업에 대하여 전수조사
- 3) 지구별조합과 업종별조합의 어업건수가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조합은 조사 전에 자기 조합원의 주소를 지구별조합으로 소속 조합원의 주소, 선명, 업종, 톤급 등 주요사항 통보
- 4) 동일어업 경영자가 2건 이상의 어선어업 허가를 보유하는 경우 주허가어업을 1건만을 등록하며, 동일 양식어장 내 2종 이상의 양식물을 양식할 경우 주된 양식물 1종만을 등록

나.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 1) 건당 어업경영자금소요액은 전체 어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조사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에 대해 표본을 선정·조사
※ 정치망어업,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신고어업, 마을어업, 구획어업, 천일염제조업은 항목별 물가상승률^(별표1)을 적용하여 같음
- 2)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은 전년도 어업건수를 기준으로 중양회에서 어업별 목표 표본을 배정한 후 조사원이 계통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수행
- 3) 동일 어업, 동일 규모의 건당소요액이 조합별로 상이하게 조사된 것은 상호 비교 검토 후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나 그 편차가 너무 커서 산술평균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상치를 조정하여 결과 추정

다. 표본조사 무응답 처리방안 및 현황

- 1) 표본조사에서 무응답 발생 시 동일 회원조합 내 비슷한 규모의 선박 또는 어장으로 대체표본을 선정하였고, 조합 내 동종의 대체표본이 없을 경우 타 조합의 대체표본을 중양회에서 선정하 후 배정하였음
- 2) 모집단의 수가 매우 적거나 감척, 휴·폐업, 어선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업종에서 모두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직전년도 소요액 기준 항목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대체값을 적용
※ 조사결과 853개 표본체 중 11.25%에서 무응답 또는 이상치가 발견되어 데이터에서 제외

11 용어의 정의

가. 어업건수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를 위한 기준 단위로서, 업종에 따라 어선어업 등은 행정처분 당 어업건수 1건, 양식업 등은 기준면적 당 어업건수 1건으로 산정함

- 행정처분 1건당 어업건수 1건 : 근해, 연안, 정치망, 구획, 신고, 내수면어로어업
- 기준면적 당 어업건수 1건 : 양식, 내수면양식, 수산종자생산, 마을, 천일염제조업

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란?

연근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 중 단기 운전성 자금으로서 어선어업의 초출어 1항차 경비 또는 양식업의 양식생산물의 최초 채취 시까지의 운영경비 (회임기간). 단, 양식업의 자금소요 회임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보완시설비와 운영자금

다. 정치망어업의 규모

정치망어업의 규모를 구획수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 중, 소로 구분

- 대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10ha 이상
- 중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5ha 이상 10ha 미만
- 소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5ha 미만

라. 어업 종류별 정의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동력어선 2척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을 포획하는 어업

▶ 대형트롤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14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소형선망어업

10톤 이상 3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자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봉수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장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문어단지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연승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형망어업

2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40톤 미만 동력어선 2척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 잠수기어업

1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선망어업

10톤 미만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 1척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통발어업

10톤 미만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 1척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조망어업

10톤 미만 동력어선 1척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 제외)를 포획하는 어업

▶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동력어선 2척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

▶ 연안자망어업

10톤 미만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 1척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들망어업

10톤 미만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 1척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복합어업

10톤 미만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1척으로 하는 아래 각 어업
(낙시, 문어단지, 손꽂치, 패류껍질, 패류미끼망 어업)

▶ 수산종자생산업

바다, 바닷가, 내수면, 인공육상수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

▶ 정치망어업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밖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 마을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m(강원, 경북, 제주 7m)범위 이내의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성게, 문어, 낙지, 쭈꾸미, 게, 갯지렁이, 우렁챙이, 개불)을 채포하는 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 이동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구획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양식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기타 시설을 하여 해조류 또는 패류, 어류 등을 양식하거나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어류, 기타 유용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내수면어업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

▶관상어양식업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보고 즐길 목적인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천일염제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 포함)을 생산하는 산업

12 조사대상어업의 종류, 명칭, 규모

가.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21개 어업)	어업 규모	
	구톤수	톤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80톤이상 ~ 170톤미만	60톤이상 ~ 140톤미만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80톤이상 ~ 170톤미만	60톤이상 ~ 140톤미만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이상 ~ 80톤미만	20톤이상 ~ 60톤미만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이상 ~ 80톤미만	20톤이상 ~ 60톤미만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이상 ~ 80톤미만	20톤이상 ~ 60톤미만
대형트롤어업	80톤이상 ~ 170톤미만	60톤이상 ~ 140톤미만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0톤이상 ~ 80톤미만	20톤이상 ~ 60톤미만
대형선망어업	70톤이상 ~ 170톤미만	50톤이상 ~ 140톤미만
소형선망어업	8톤이상 ~ 30톤미만	10톤이상 ~ 30톤미만
근해채낚기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자망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안강망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붕수망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자리돔들망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장어통발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문어단지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통발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연승어업	8톤이상 ~ 90톤미만	10톤이상 ~ 90톤미만
근해형망어업	25톤미만	20톤미만
기선권현망어업	50톤미만	40톤미만
잠수기어업	8톤미만	10톤미만

나. 연안어업

어업의 종류 (8개 어업)	어선규모	
	구톤수	톤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미만의 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연안선망어업	8톤미만의 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연안통발어업	8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연안조망어업	8톤미만의 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연안선인망어업	8톤미만의 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연안자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연안들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연안복합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다. 정치망어업

- 1) 대형정치망어업 (구획수면의 면적이 10ha 이상)
- 2) 중형정치망어업 (구획수면의 면적이 5ha 이상 10ha 미만)
- 3) 소형정치망어업 (구획수면의 면적이 5ha 미만)

※ 시설 종류 :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어구

라. 수산종자생산업

바다, 바닷가, 내수면 또는 인공적으로 해수, 담수, 기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어업의 종류	수산종자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어장사이의 거리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어류, 패류, 갑각류, 그밖의 수산동식물	수조면적 33㎡이상	
	해조류의 종자(항온배양의 경우)	배양실 5㎡이상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어류, 갑각류, 그밖의 수산동식물	시설면적 1,000㎡ 이상	
밭줄식 수산종자생산업	패류, 해조류, 그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5,000㎡~50,000㎡	100m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5,000㎡~50,000㎡	50m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패류, 그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5,000㎡~50,000㎡	100m

※ 시·군·구청장은 육상수조식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해 시설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음

마. 양식업

1) 해조류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 하 식 양 식 업	1) 건홍식 가) 지주망홍 나) 부류망홍	1 이상	1 이상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8 이하
	2) 연승식	1 이상	1 이상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미역·다시마의 경우에는 50이상 20이하)
나. 바 닥 식 양 식 업	투석식 천해	30 이하	20 이하	200 이상	90 이상

2) 패류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 하 식 양 식 업	1) 간이식				
	가) 수하연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나) 수평망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다) 수평끈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2) 연승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3) 뗏목식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3 이상 10 이하
나. 바 닥 식 양 식 업	1) 살포식				
	가) 간석지	10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나) 천해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2) 투석식 등				
	가) 간석지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나) 천해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다. 가두리식 양 식 업	3) 침하식				
	천해	10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다. 가두리식 양 식 업	가두리식	2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3) 어류등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업	가두리식	10 이하	10 이하	300 이상	5 이상 20 이하
나. 축제식 양식업	축제식	20 이하	20 이하	-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업	1) 연승식 2) 땃목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라. 바닥식 양식업	1) 살포식				
	가) 간석지	10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나) 천해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2) 투석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20 이하
	3) 침하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4) 복합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업	1) 연승식 (해조류·패류·어류등)	20 이하 (해조류는 1이상)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미역·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2) 건홍식과 연승식 (해조류·패류)	20 이하 (해조류는 1이상)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나. 바닥식 양식업	1) 살포식 (패류의 전복·어류등의 해삼)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2) 살포식과 투석식(패류)	10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10 이상 25 이하(굴) 80 이상(바지락)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다. 축 제 식 양 식 업	축제식 (패류·어류등)	20 이하	20 이하	-	20 이상
라. 혼 합 양 식 업	1) 건홍식과 살포식 (해조류·패류)	100 이하	20 이하	200이상	5 이상 18 이하 (해조류) 80 이상(패류)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해조류·패류)	20 이하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0 이하 (해조류) 80 이상(패류)
	3) 침하식과 연승식 (해조류·패류)	10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4) 가두리식과 연승식 (해조류·패류)	10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5) 가두리식과 살포식 (패류 중의 전복·어류 등의 해삼)	1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6) 가두리식과 투석식 (패류 중의 전복·어류 등의 해삼)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7) 수평망식과 살포식 (수평망식 굴과 그 밖의 패류)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마. 가두리식 양 식 업	가두리식 (패류·어류 등)	1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5) 협동양식업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협동양식업과 마을어업이 연결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어장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6)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지 역 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다만,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다만,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7) 외해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외해가두리식 양식업	외해 가두리식	5 이상 60 이하	5 이상 60 이하	500 이상	2 이상 20 이하

- 비고: 1.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 및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어장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같은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바. 구획어업

1) 정치성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어선 단, 시·도지사의 허가에 의해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 승망류어업 :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장망류어업 :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비 고
새 우 조 망 어 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패 류 형 망 어 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 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	

사. 신고어업

신고어업이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으로서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아. 내수면어업

내수면은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으로 내수면어업도 수산업의 일부분이나, 수산업법에 대한 특별법인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을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의 물흐름 또는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함

자. 관상어양식업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함

차. 천일염제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음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함

구비시설	구비시설별 기준
가. 저수지 나. 증발지 다. 결정지 라. 해주(함수저장고) 마. 소금창고 바. 용수로 사. 배수로	1) 저수지의 취수구에는 부유물질 유입방지 차단막을 설치할 것 2) 결정지 바닥재 소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3) 해주 및 소금창고에는 슬레이트(석면) 등 식품안전을 해치는 시설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4) 결정지로 연결되는 용수로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등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과시설이 설치될 것



II

조사결과

1. 총괄
2. 조합원, 비조합원 건수 및 소요액 현황
3. 금융본부별 어업건수 및 소요액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하여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II. 조사결과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 총괄

- 2024년도 전체 어업건수는 261천건으로 전년대비 6.0% 증가, 총소요액은 7조 9036억원으로 3.3% 증가함
 - 감척사업 등으로 근해어업의 어업건수가 감소(△9.7%)하였으며, 마을어업(19.4%), 신고어업(11.7%) 등의 어업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요액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근해어업(△5.0%), 구획어업(△0.8%)을 제외한 나머지 어업에서 다소 증가함

〈어업별 어업건수 및 소요액〉

(단위 : 건, 백만원)

어업		건수				소요액			
		2023년	2024년	증감	증가율	2023년	2024년	증감	증가율
계		246,205	260,994	14,789	6.0%	7,648,998	7,903,635	254,637	3.3%
어선 어업	소계	34,287	33,810	-477	-1.4%	1,350,347	1,342,445	-7,902	-0.6%
	근해	2,026	1,830	-196	-9.7%	524,716	498,482	-26,234	-5.0%
	연안	32,261	31,980	-281	-0.9%	825,631	843,963	18,332	2.2%
정치망어업		464	464	-	-	89,281	91,907	2,626	2.9%
양식업		124,091	129,462	5,371	4.3%	4,402,648	4,441,506	38,858	0.9%
마을어업		10,427	12,454	2,027	19.4%	266,557	325,207	58,650	22.0%
구획어업		4,547	4,729	182	4.0%	87,606	86,878	-728	-0.8%
신고어업		39,942	44,624	4,682	11.7%	176,364	195,281	18,917	10.7%
수산종자생산업		7,856	8,358	502	6.4%	278,042	304,932	26,890	9.7%
내수면어업		23,278	25,716	2,438	10.5%	962,910	1,077,452	114,542	11.9%
천일염제조업		1,313	1,378	65	4.9%	35,242	38,027	2,785	7.9%

2

조합원, 비조합원 건수 및 소요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어업	건수	소요액	비율	조 합 원		비 조 합 원	
				건수	소요액	건수	소요액
계	260,994	7,903,635	100.0%	183,871	5,633,703	77,123	2,269,932
어선어업	33,810	1,342,445	17.0%	29,739	1,204,543	4,071	137,902
(근해)	1,830	498,482	6.3%	1,678	464,607	152	33,875
(연안)	31,980	843,963	10.7%	28,061	739,936	3,919	104,027
정치망어업	464	91,907	1.2%	359	71,320	105	20,587
양식업	129,462	4,441,506	56.2%	66,552	2,637,069	62,910	1,804,437
마을어업	12,454	325,207	4.1%	12,454	325,207	-	-
구획어업	4,729	86,878	1.1%	3,738	62,945	991	23,933
신고어업	44,624	195,281	2.5%	44,624	195,281	-	-
수산종자생산업	8,358	304,932	3.9%	6,340	237,950	2,018	66,982
내수면어업	25,716	1,077,452	13.6%	19,766	891,130	5,949	186,323
천일염제조업	1,378	38,027	0.5%	299	8,259	1,079	29,769

3 금융본부별 어업건수 및 소요액

(단위 : 건, 백만원)

금융본부	건수	소요액				
		합계	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지구별	업종별	
계	260,994	7,903,635	5,633,703	3,683,435	1,950,267	2,269,932
경인	10,480	274,063	191,311	172,953	18,359	82,752
강원	5,829	268,705	211,556	211,556	-	57,149
충청	25,639	433,534	344,579	344,579	-	88,955
전북	23,325	371,149	343,611	343,611	-	27,538
전남	133,397	3,951,504	2,369,101	1,464,007	905,094	1,582,403
경북	5,839	260,383	229,187	217,248	11,939	31,196
경남	35,644	1,362,046	1,045,489	684,315	361,174	316,557
부산	5,700	230,009	213,353	62,899	150,454	16,655
제주	15,142	752,242	685,515	182,268	503,248	66,727

참고 공표대상 어업별 상대표준오차 산출 방식

업 종	모집단	조사표본	$\hat{Y}$	SE	RSE
근 해 어 업	1,830	300	581,659,170,640	37,184,308,401	6.4%
연 안 어 업	31,980	276	919,792,329,696	47,358,648,150	5.1%
내 수 면 어 로	1,258	37	17,096,369,600	3,480,275,024	20.4%
내 수 면 양 식	1,322	152	58,196,957,819	4,463,647,139	7.7%

■ 조사항목에 대한 어업종류별 규모별 지역(조합)별 총계 추정식

$$\hat{Y} = \sum_{h=1}^L \sum_{i=1}^{n_h} w_{hi} y_{hi}$$

$$\widehat{RSE}(\hat{Y}) = \frac{\sqrt{\widehat{V}(\hat{Y})}}{\hat{Y}} \times 100(\%)$$

- $w_{hi} = \frac{N_h}{n_h}$: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가중치
- h : 어업종류로 구분된 층
- w_{hi}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가중치
- N_h : h 층의 모집단 수
- n_h : h 층의 표본 수
- y_{hi}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응답값

■ 분산추정식

$$\wide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tau_{hi} - \bar{\tau}_h)^2$$

$$\tau_{hi} = w_{hi} y_{hi}, \quad \bar{\tau}_h = \frac{1}{n_h} \sum_{i=1}^{n_h} \tau_{hi}, \quad f_h = n_h/N_h$$

■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RSE}(\hat{Y}) = \frac{\sqrt{\widehat{V}(\hat{Y})}}{\hat{Y}} \times 100(\%)$$

별 표

(별표1) [비조사년도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업종	비용 구분	적용 물가지수	출처
정 치 망 구 신 마 획 고 을	선채수리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기관수리비	공업제품 부문 물가상승률	KOSIS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어구수리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선원임금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	해수부 고시(선원 최저임금 고시)
	복리후생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유류비	어업용면세유 가격인상률 (경유)	면세유 가격표
	용품비	상품부문 물가상승률	KOSIS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얼음 및 어상자	상품부문 물가상승률	KOSIS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주부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KOSIS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양 식 수 산 종 자 생 산	종묘비	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시설유지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보조선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	노동부 인건비 인상률	KOSIS-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전체
	운영관리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사료비	사료부문 생산자물가상승률	KOSIS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 -사료
천 일 염 제 조	인건비	노동부 인건비 인상률	KOSIS-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전체
	시설유지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복리후생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포장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운영관리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KOSIS 소비자 물가지수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

발행인 회 장 노 동 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직무대행) 박 지 용

수산경제연구원 전화 (02)2240-0406~7

연락처 팩스 (02)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발행일 2024년 12월

〈비매품〉